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
----------	-----

2022년 12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김춘곤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개방 여부에 따라 대피 시간 또는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학교운동장 등은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또한,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현행 시민에 부여되었던 대피소 운영 협력 의무를 삭제함(안 제43조제2항)
- (2)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출입문 개방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3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현행 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¹⁾를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안 제5조 및 제43조제2항)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
- 지진 발생 시 대피 시민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에게 행정안전부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을 즉시 개방토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안 제43조제3항)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인권담당관-2220, 공문시행일 2022. 3.11.)

현행	개정안
제5조(시민의 <u>책무</u>)	제5조(시민 <u>의무</u>)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u>시민</u> 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div style="text-align: right;"><신설></div>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u> -----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

- 먼저, 안 제5조에서 조제목을 현행 “시민의 책무”에서 “시민 의무”로 변경하는 사항과,
- 안 제43조제1항에서 현행이 “시민”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여 대피소와 대피경로 등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한편,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 “시장”에게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를 시민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사항의 이상 두 개 사안은 모두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2)에 따라 시 인

2)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

권위원회가 2021년도에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55개(조례 46, 규칙 8, 규정 1)에 대해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서울시에 권고 ((붙임 1) 참조)한 것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43조제3항의 신설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에게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9월 기준 총 1,543개소(총 면적 870만㎡, 대피가능인원 1,055만명)로 이 중 학교운동장은 1,019개소이며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표] 참조).

[표] 지진옥외대피장소 현황(‘22.9월 기준)

총계	학교운동장	공원	기타
1,543	1,019 (대명중, 경문고 운동장 등)	471 (탄천근린공원, 문래공원 등)	53 (암사유적지부설주차장, 삼지마당쉼터 등)

-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공원, 공터 등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별도의 개방조치가 필요 없으나 학교운동장의 경우는 주말,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출입문이 잠겨있어 유사시 즉각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 대피에 제약이 따르게 됨.

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시는 ‘20년 3월 행정안전부에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근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마련³⁾(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 해 줄 것과, 교육부 및 시교육청에는 매뉴얼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이들 모두가 반영됨(〔표〕 참조).

3)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5. 26.]

[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관련 서울시 건의 및 개정내용(행정안전부, 교육청)

서울시 건의내용(시→행정안전부) (‘20.3.18.)	행정안전부 개정내용 (‘20.7.16.)
<p>개방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개정 →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시행령 개정시 반영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및관리등) 관련 <u>시행령에 학교운동장의 출입문 개방 근거 포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u>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u>」개정(‘20.7월) - <u>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출입문이 즉시 개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u> - 야간·휴일 등 대피장소 출입문이 닫혀있을 경우를 고려, 지진발생시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시건장치 담당자 역할 안내
서울시 건의내용(시→교육부, 서울시교육청) (‘20.3.19)	서울시교육청 개정내용 (‘20.12.8.)
<p>개방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매뉴얼 개정 → <u>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u>에 반영 - 「<u>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u>」 <u>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u>에 시민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市교육청 학생 안전 매뉴얼</u>개정(‘20.12월) - <u>지진규모별 학교 조치기준</u> <u>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개방</u> (규모 4.0 미만 개방여부 학교장 판단)

- 따라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진규모별 조치기준, 시건장치 담당자의 역할 등 출입문 개방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붙임 2) 참조)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안전 매뉴얼」 ((붙임 3) 참조)등에 근거할 때,
- 동 개정안이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토록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은 유사시 조치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 의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시민”을 “시장”으로, “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민의 <u>책무</u>)</p> <p>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생 략)</p> <p>② <u>시민</u>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 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 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u>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 야 한다.</u></p> <p><신 설></p>	<p>제5조(시민 <u>의무</u>)</p> <p>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u>----- ----- -----할 수 있도록 <u>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u></p> <p>③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제 10조의3에 따라 <u>지진 옥외대피 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 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u></p>